

의안번호	제 646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윤 홍 창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7년 6월 26일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흥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6
----------	-----

발의연월일: 2017년 6월 26일

발 의 자: 윤흥창, 정영수, 이종욱,
이숙애, 임현경, 최광옥,
박봉순

1. 제안이유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교육감과 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동일하게 하고 위원의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임 규정을 마련하며,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정기회 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함
(안 제3조 제1항)

나.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교육 행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 2명, 도지사 2명 이내로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제 2호)

- 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과 사임,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에 대한 임기를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는 내용을 명시함(안 제4조)
- 라. 정기회의 개최를 8월로 변경함(안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 나.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 다. 관계부서협의: 협의완료(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담당, 충청북도청 정책기획관 교육지원팀)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36호
 -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3명” 을 “14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3명 이내로 공동 추천한다” 를 “각각 2명 이내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년으로 한다” 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9월” 을 “8월”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 장 2명을 포함한 <u>13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어느 한쪽 성(性)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의장이 된다.</p> <p>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생략)</p> <p>2.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교육행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u>3명 이내로 공동 추천한다.</u></p> <p>③ (생략)</p> <p>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p>	<p>제3조(구성) ① ----- ----- <u>14명</u> ----- ----- ----- ----- ----- -----.</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u>각각 2명 이내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임기) ① -----</p>

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 설>

제7조(회의 등) ① (생략)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9월 중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생략)

-----.

-----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8월 -----

-----.

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